

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84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,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하려 합니다.

2025. 10. 27.

동 탄 6 동 장

1. 제 목 :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
2. 근거법규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,
같은 법 제84조(과태료)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
3. 공고기간 : 2025. 10. 27. ~ 2025. 11. 03.
4. 공고대상 : 근*청 (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5*, 10*동 60*호)
5. 공시송달내용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나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기간 (2025. 11. 03. 까지) 도과시에는 과태료 자진 납부시 과태료 감경 혜택(20%) 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.
6. 문의사항 : 화성시 동탄6동 (☎ 031-5189-4312)
※ 의견제출처 : (우 편)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54, 동탄6동행정복지센터
(팩 스) 031-5189-4945